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의결사항	
------	--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자	고 성 군 수
제출연월일	2023. 7. 4.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3. 7. 4.

제 출 자: 고성군수

1. 제안이유

2022. 7. 31.자로 폐지된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에 대해 기존 수탁법인과의 위·수탁 종료에 따라 운영능력을 갖춘 공신력 있는 수탁운영자를 선정하여 노인요양시설로서 시설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시설 위탁 운영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위탁근거

-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다. 「노인복지법」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 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 마. 「고성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시설의 위탁)
- 바.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3. 주요내용

가. 시설유형: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시설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

나. 시설현황 (단위: 명)

시설명	소재지	설치년도	규모	입소정원	비고
고성군치매 전문요양원	고성읍 남포로 79번길 125	2000.11.01	지하1층,지상2층 1,727.28㎡	64	

다. 현 위탁자 현황: 없음

라. 위탁개요

1) 위탁운영기간: 위탁일로부터 5년간

2) 위탁사무내용: 노인요양시설 운영 전반

3) 수탁기관 선정방식: 공개모집 공고 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한 선정

4) 운영재원: 장기요양급여비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후원금, 법인전입금 등

5) 위탁연도별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단위: 천 원)

위탁연도	소요예산	산출근거	비고
계	1,588,800		
2023년 ~2024년	500,000	- 고성군치매요양원 내외부 개보수 1식 · 설계비 및 설비(소방·전기·배관)보수: 298,320 · 창호 및 각종 출입문 보수: 27,000 · 방수·도장 및 균열 보수: 174,680	
2024년	214,880	- 기초수급 입소자 생계비: 303천 원×30명×12월 = 109,080 - 종사자수당: 1인당 연간 2,600천 원×40명 = 104,000 - 사회복지사수당: 30천 원×5명×12월 = 1,800	
2025년	216,320	- 기초수급 입소자 생계비: 307천 원×30명×12월 = 110,520 - 종사자수당: 1인당 연간 2,600천 원×40명 = 104,000 - 사회복지사수당: 30천 원×5명×12월 = 1,800	
2026년	217,400	- 기초수급 입소자 생계비: 310천 원×30명×12월 = 111,600 - 종사자수당: 1인당 연간 2,600천 원×40명 = 104,000 - 사회복지사수당: 30천 원×5명×12월 = 1,800	
2027년	219,200	- 기초수급 입소자 생계비: 315천 원×30명×12월 = 113,400 - 종사자수당: 1인당 연간 2,600천 원×40명 = 104,000 - 사회복지사수당: 30천 원×5명×12월 = 1,800	
2028년	221,000	- 기초수급 입소자 생계비: 320천 원×30명×12월 = 115,200 - 종사자수당: 1인당 연간 2,600천 원×40명 = 104,000 - 사회복지사수당: 30천 원×5명×12월 = 1,800	

※ 인건비, 시설운영비 등은 장기요양급여 비용으로 충당

※ 위탁계약에 따라 위탁시행 연도 변경 가능

4. 기대효과

가. 노인요양시설 운영에 있어 전문성, 재정능력 등을 갖춘 공신력 있는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노인요양시설로서 시설운영 정상화

5. 향후 추진계획

가. 추진계획

- 2023. 7. 기능보강 예산 제2회 추경 반영
- 2023. 7. 위탁기관 모집 공고 및 접수
- 2023. 7. 위탁기관 선정·심사
- 2023. 9. 위탁운영 계약 체결

6. 참고사항

- 가.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추진계획: 붙임 1
- 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붙임 2
- 다. 관계법령: 붙임 3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추진계획

군립 노인요양시설인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2022.7.31. 폐지)의 운영재개를 위한 위수탁 추진을 통하여 운영능력 및 공신력을 갖춘 수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입소희망 어르신에 대한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I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노인복지법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 고성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시설의 위탁)
-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II 추진방향

- 노인요양시설 운영에 있어 전문성, 재정능력 등을 갖춘 공신력 있는 법인에 위탁
- 위탁 추진의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 확보를 위해 공개모집 및 수탁자 선정심의 위원회 심사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
- 공개경쟁 민간위탁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위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하여 심사·결정

III 위탁개요

- 시설현황

시설명	소재지	설치일	규모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	고성읍 남포로79번길 125	2000.11.01	지하1층, 지상2층 1,727.28m ²

- 시설 유형: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시설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
- 운영재원
 - 장기요양급여비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후원금, 법인전입금 등
- 위탁기간: 5년(2024. 1. 1. ~ 2028. 12. 31.)
 - ※ 위탁계약에 따라 시행일 변경 가능
- 위탁사무: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 운영전반 및 시설관리
- 위탁방법: 공개모집 공고 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한 선정
- 수탁자의 자격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 정관상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이 가능한 법인
 - 신청일 현재 경상남도 고성군에 주사무소를 두고있는 법인
- 수탁 제외자
 - 사회복지사업법 34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시설을 설치·운영 신고할 수 없는 법인
 - 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 2부터 제1호의 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 수탁신청 법인이 수탁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 근거 법률(「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시설장 교체 또는 업무(사업) 정지 이상)이나 벌칙을 받은 경우
 - 수탁신청 법인이 수탁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행정처분(업무정지) 및 벌칙을 받은 경우

IV 세부 추진계획

□ 모집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2023년 7월 중 1차 공고 예정
 - 법인의 신청이 없거나 수탁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신청자격(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역)을 2회차 경상남도, 3회차 전국으로 확대하여 공고

- 공고방법: 고성군 홈페이지(공고안: 붙임 참조)
- 접수방법: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
 - 운영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구성인원: 위원장 1명 포함한 9명 이내
 - ※ 별도 계획 수립예정(세부 구성 및 세부 심의기준)
- 선정기준
 -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시설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수탁자 선정 심의기준 및 배점

심사기준	심사항목	배점
		100점
1. 수탁자의 적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유형 및 설립목적 - 법인의 보유자산(부동산, 동산 구분) - 법인대표 및 이사회 의 적합성 - 해당 법인의 사회복지사업 운영실적 	30점
2.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의 사회복지사업 전문성 - 시설장 및 종사자의 전문성 - 사업계획의 전문성 및 타당성 - 시설운영의 전문성 강화방안 - 최근 법인 재무제표 - 재정운영 및 투자계획의 타당성 - 재정책총방안 현실성과 타당성 -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방안 - 복지부 보급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 	50점
3.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조성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내 공신력 제고방안 -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방안 - 지역사회자원동원 방안 	20점

○ 선정방법

-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심의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하여 70점이상 획득한 법인 중 최고 점수를 획득한 법인을 수탁자로 선정
 - ※ 단,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점수 합산
 - 동점일 경우 수탁자의 공신력과 책임능력, 사업수행능력,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 순으로 득점을 많이 받은 법인으로 선정
 - 신청 법인에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면접심사 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포기하는 법인을 제외하고 심의하여 적격 여부 결정
 - 단독 신청시 1회 재공고, 재공고 후 1개 법인 신청 시 선정심의위원회 개최하여 70점 이상일 경우 수탁자로 결정
- 선정결과: 개별통보 및 고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시

V 세부추진 일정

- 2023. 7.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의회)
- 2023. 7.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 기능보강예산 제2회 추경 반영
- 2023. 7.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 위탁 공고 및 수탁자 선정
- 2023. 8.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 개보수 공사 실시
- 2023. 9.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 위수탁 계약 체결
- 2024. 1.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 재개원(예정)

VI 행정사항

- 2023. 7. :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 기능보강사업 예산확보
- 2023. 7.~ : 위탁 공고 및 위수탁 계약 등 행정절차 이행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군립 노인요양시설인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의 민간위탁을 위한 적정성 검토 보고임

I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 노인복지법 제35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 고성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II 사업개요

- 위탁사무 :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 운영
- 現수탁자 : 없음
- 위탁기간 : 5년
(2024. 1. 1. ~ 2028. 12. 31, 변경가능)
- 위탁업무내용
 -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 운영 전반
 - 위탁재산(시설·장비·비품 등)의 유지 및 관리

III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검토기준	검토결과
	○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은 노인복지법 제35조 및 고성군 노인복지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판정 노인의 입소

검토기준		검토결과
공 공 성	① 다른 사무 방식에서의 수행 가능성	<p>및 보호를 위해 설치된 시설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요양시설로서 입소 어르신에 대한 건강상태 및 생활 전반에 대한 관리, 어르신 프로그램 운영, 요양원 홍보 및 후원 네트워크 구축 등 고성군 거점 노인요양시설으로서 역할을 하므로 민간의 전문성 및 업무의 중요도를 고려하였을 때 수탁자 명의 및 책임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 ○ 실무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매뉴얼에 따라 업무가 진행됨으로 민간위탁하여 운영 적정 ○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무로 직영할 경우 후원금 모집이 불가하므로 민간위탁 사무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
	② 서비스 공급 공공성 및 안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요양등급 판정 어르신에 대한 안락한 노후생활 제공 및 돌봄이 필요한 기초수급 어르신에 대한 보호 필요성 등 공공성이 요구되는 서비스를 제공함 ○ 공립 노인요양시설로 기능하며 입소 어르신 보호 및 사례관리·프로그램 운영 등 입소 어르신에 대한 직접적 서비스 제공을 하는 사무로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이 필요 ○ 직영의 경우 긴급한 인력채용 필요시 행정절차 준용으로 즉각적인 인력투입의 어려움 등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에 한계
효 율 성	③ 경제적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지역에서 활동중인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며, 민간주도로 형성된 요양시설 간의 서비스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비용절감 기능 ○ 인력 유지를 위한 비용(직영의 경우 공무원 전환 가능성) 및 채용 절차상 행정절차 준용을 위한 추가비용 등 행정비용 발생
	④ 민간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소 어르신에 대한 케어와 현장경험이 축적된 민간의 전문지식, 인력,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운영의 효율성 도모 가능
	⑤ 사업성과 측정 용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운영 계획에 기반하여 사업 실적 및 자료 관리가 가능하며, 관련 자료는 통계 자료 등으로 활용하여 사업 개선과 발전 도모

검토기준	검토결과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성군은 수탁법인 및 시설에 대한 감독책임이 있으며, 위·수탁 계약체결을 통해 운영방식 및 사업 계획을 관리 가능 ○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에 따라 수탁법인 및 시설을 지도·감독하고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계약 취소 등의 조치 가능
⑦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노인요양시설(7개소)이 있으나, 공립시설의 입소를 희망하는 일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있으며,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사례 및 민간시설의 폐업·운영중지 등 돌발적인 상황대비를 위한 공립시설 필요
⑧ 그 밖의 민간 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은 군립 노인요양시설로서 관내 돌봄의 필요한 어르신의 노후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설로서 고성군 소재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등에서 운영 필요

IV 검토결과

검토사항

- **(공공성)** 노인복지법 제35조에 의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 21조의2 및 고성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제6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은 장기요양등급 판정 어르신을 입소대상으로 하며 관내 군립 요양시설로서 지역의 노인복지 거점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이 필요하나 직영의 경우 인사 등 인력운용 상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음.

- **(효율성)** 입소 어르신에 대한 보호 및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그간 축적된 민간의 전문지식과 현장경험, 관련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행정비용 절감 및 업무 효율성 제고 가능. 또한 성과 측정, 지도·감독을 통해 경제적 효율성 달성 및 관리의 투명성 제고 가능

검토의견

-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 운영 사무는 공공성과 효율성이 모두 충족되며, 특히 전문적인 민간 전문인력 활용 가능성 및 운영 비용 절감·후원금 모집 가능 등 효율성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판단되는 바, 해당사무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 (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6. 2. 3., 2017. 10. 24.>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④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 8. 4., 2019. 1. 15.>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 11. 5., 2012. 8. 3., 2019. 6. 12., 2020. 1. 3.>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11. 5., 2020. 1. 3.>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11. 5., 2020. 1. 3.>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7. 3. 7., 2008. 11. 5., 2020. 1. 3.>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0. 1. 3.> [본조신설 2004. 9. 6.]
[제2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2012. 8. 3.>]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9. 6. 12.>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6. 8. 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6. 8. 3.>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23조에서 이동 <2012. 8. 3.>]

□ 노인복지법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31., 2011. 6. 7.>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④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2. 8., 2007. 4. 11.,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8. 3. 13.>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18. 12. 11., 2020. 3. 31.>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20. 3. 31.>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공단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8. 12. 11., 2020. 3. 31.>

1.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능력
2.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및 장기요양요원이 이 법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
3.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계획
4.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수 및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 특성
5.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때 지체 없이 지정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18. 12. 11.>

⑤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중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방문간호의 관리책임자로서 간호사를 둔다. <신설 2018. 12. 11.>

⑥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1.>

□ 고성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시설의 위탁)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운영능력과 재정력이 있는 법인
2. 사업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법인
3. 과거 이와 비슷한 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법인

② 노인복지시설의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고성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민간위탁 여부에 관하여 고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검침, 주차시설, 차량 운행 등 연간 반복적 단순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
2.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이하 “재계약”이라 한다)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안을 군의회에 제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 내용
4. 민간위탁 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에 필요한 사항